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5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59)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액 규정 삭제
(안 제2조제4항)
- 승용차 요일제(경과기간: '20.7.8.)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
(안 별표 1 제14호)

4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사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제4항)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감액 규정내용을 삭제하고,
- (안 별표 1 제14호)에 승용차 요일제(경과기간:‘20.7.8.)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감액 규정 삭제와 「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다만,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도움이 된 제도인 승용차요일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주는 승용차마일리지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